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나306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나3064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소236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11. 17.

판결 선고 2021. 1. 19.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소236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을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7, 11, 16, 18, 19호증, 갑 제14, 15호증의 1, 2,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채권 보유 경과

1) 원고는, "원고가 2007. 12.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1억 6,000만원을 대여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C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2244호로 위 3개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6. 5.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9. 6. 30.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10. 8. 460만 원을, ② 2010. 11. 29. 160만 원을, ③ 2011. 5. 4. 186만 원을, ④ 2011. 5. 23. 12만 원을, ⑤ 2011. 8. 11. 150만 원을, ⑥ 2012. 10. 10.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변호사 F에게, ① 2010. 12. 20. 20만 원을, ② 2012. 11. 13. 20만 원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9599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경과

1) C에 투자한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9599호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원인

D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별지 제6목록 부동산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60번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D는 2001. 7. 20. 별지 제6목록 부동산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60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09. 6. 5. 그 직원인 G 명의로 2001. 3. 10.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D는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면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는데, C와 D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한국공항공사는 D에 별지 제6목록 부동산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60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C에 대한 투자자들은 D를 대위하여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한국공항공사는 D에 별지 제6목록 부동산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60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9. 7.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C에 대한 투자자이고, C이 별지 제6목록 부동산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60번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3. 확정되었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9287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 경과

1)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9287호로 G 및 H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이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

D의 대표이사 I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D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별지 제1목록 내지 별지 제6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D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그

직원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졌는데, G 앞으로 마쳐진 별지 제1목록 내지 별지 제6목록 부동산에 관한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로 마쳐졌다.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D를 대위하여 별지 제5목록 부동산의 소유자 H를 상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H은 D에 별지 제5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명의의 2013. 1. 21.자 소취하서가 위 법원에 제출되었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7. 10. '① 별지 제1목록 내지 별지 제6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G와 D 사이에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G는 D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② H은 D에 별지 제5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2013. 8. 1.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D의 직원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회수 업무를 위임하였고, 제1의 나.항과 같이 그 경비로 1,308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2. 13. 피고로부터 피고에게 지급한 채권회수 경비 중 408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900만 원(= 1,308만 원 - 40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 (i)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피고는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상의 없이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채권 회수를 방해하였다. (ii) 피고는 확보한 공시지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별지 제4목록 부동산 및 별지 제5목록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다고 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지인인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사기 또는 배임행위를 하여 채권 회수를 방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의 회수 기회를 박탈당하여 그 미회수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② 약정금 :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였던 경비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2. 2. 13. 피고로부터 408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피고는 나머지 900만 원(= 1,308만 원 - 408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③ 부당이득금 : (i)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채권회수 경비를 부당이득하였다. (ii) 피고는 확보한 공시지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별지 제4목록 부동산 및 별지 제5목록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다고 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지인인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별지 제4목록 부동산 및 별지 제5목록 부동산 시가 상당액인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 피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피고에게 사례를 한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소를 취하하였다.

D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된 비용을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취하서 제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민법 제407조는 '전조(채권자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므로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취소채권자는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후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내용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이때에 다른 채권자들은 이중경매의 신청·배당요구 등에 의하여 절차에 참가하고 평등배당을 받을 기회가 부여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D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할 별지 제1목록 내지 별지 제6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회수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고, 소취하와 행위와 미회수 채권 상당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없다(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도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약정 임무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지배인인 J 명의로 별지 제4목록 부동산 및 별지 제5목록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양도하니, 원고에게 농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여 달라'는 2013. 8. 12.자 농지양도증명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별지 제4목록 부동산 및 별지 제5목록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할 처분권한이 있었고, 피고가 별지 제4목록 부동산 및 별지 제5목록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약정된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D 앞으로 원상회복된 별지 제1목록 내지 별지 제6목록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별지 제1목록 내지 별지 제6목록 부동산은 D의 책임재산이므로 피고가 그 책임재산의 일부인 별지 제4목록 부동산 및 별지 제5목록 부동산을 원고에게 단독으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로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원고는 무권리자인 D로부터 별지 제4목록 부동산 및 별지 제5목록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양수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별지 제4목록 부동산 및 별지 제5목록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정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이득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 회수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 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경비를 수령하였다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경비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나, 피고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제4목록 부동산 및 별지 제5목록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우연

판사이재석

판사정문성

별지